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제출: AA00451-0000000149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G-40M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그리스, 오일컴파운드 고온용윤활제
사용상의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다. 공급자정보	
제조사	
회사명	신에츠화학공업주식회사
담당부서	군마 사업소 품질 보증부
주소	일본 군마현 안나가시 이소베2가 13-1(우379-0195)
전화번호	+81(0)27-385-2172
FAX번호	+81(0)27-385-2753
공급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담당부서	업무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지티타워15층)
전화번호	+82(0)2-590-2500
FAX번호	+82(0)2-590-2501
응급상황	+82(0)2-590-2500
이메일	msds@shinetsu.net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환경 유해성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구분 3
*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성은 "분류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또는 "분류가 가능하지 않음"임.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없음.
○ 신호어	없음.
○ 유해·위험 문구	
H41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함.
○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폐기	
P501	폐기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알려지지 않음.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보충정보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트라이 토일 포스페이트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1330-78-5	KE-28648	0.3 ~ 1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다량의 물로 최소 15분간 씻으시오. 자극이 발생하고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접촉 부위를 세척할 것. 자극이 발생하고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아. 증발 속도	사소한 (부틸 아세테이트=1)
자.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 하한 (%)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 상한 (%)	자료없음
카. 증기압	무시할수있음(25°C)
타. 용해도	
용해도(물)	불용성
파. 증기밀도	해당없음
하. 비중	1.05 (25°C)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해당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해당없음
머. 분자량	해당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위험한 중합 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가열 또는 연소에 의해 분해생성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따라 미량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함: 이산화규소, 포름알데히드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o 호흡기	자료없음.
o 피부	자료없음.
o 눈	자료없음.
o 경구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o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트라이 토일 포스페이트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1330-78-5)		
급성		
경구		
LD50	쥐	5190 mg/kg
경피		
LD50	토끼	> 7900 mg/kg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o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o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o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o 발암성	IARC-Gruop 1, 2A, 2B 등재되지 않음.	
o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없음.	
o 생식 독성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트라이 토일 포스페이트]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 o 흡인 유해성: 해당없음.
- 다. 기타 정보: 다른 구성 요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트라이 토일 포스페이트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1330-78-5)		
수생 어류	LC50	무지개송어 0.6 mg/l, 96 시간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자료없음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트라이 토일 포스페이트]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다른 구성 요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소각처리. 소각시 실리카분말이 생성하므로 적절한 설비에서 소각하시오.또 필요한방진마스크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를 처리업체에 연락할 것. 이 물질이 하수구/수로로 유입되지 않게 할 것.
-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 가. 유엔번호: 해당없음.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해당없음.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위해 등급: 해당없음.
부수적 위험: -
-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 마. 환경유해성: 아니오.
- 바. 사용자에게 대한 특별한 안전 대책: 해당없음.

국제해상위험물 (IMDG)

- 가. 유엔번호: 해당없음.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해당없음.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위해 등급: 해당없음.
부수적 위험: -
-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 마. 환경유해성: 해당없음.

해양오염물질

- EmS: 해당없음.
- 바. 사용자에게 대한 특별한 안전 대책: 해당없음.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본제품은 포장없이 그대로 실어 수송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노출기준설정물질

규제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질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트라이 토일 포스페이트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1330-78-5)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에 관한 규정, MoE 번호 2014-252, 2014년 12월 31일; 살충제에 관한 규정, RDA 번호 2014-26), 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목록명

목록 등재 (예/아니오)

한국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대한민국.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허가 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금지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

대한민국. 제한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AREC),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대한민국. 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대한민국. 관리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특별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나. 최초 작성일자

2012년 12월 24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23년 4월 25일 (05 개정)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규격 및 보증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취급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도로 개발,제조 된 제품입니다.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 테스트하여,해당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 하십시오.의료용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개정 정보

본 서류는 중대 수정을 거쳤으므로 상세히 재열독 해야 함